



## 구의회사무국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

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와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』 외 3건을 제·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강북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### 1. 조례현황

연번	발의의원	안건명	비고
1	이용균	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	
2	김명숙, 이정식 유인애, 한동진 구본승, 김영준 장동우	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
3	유인애, 이정식 김명숙, 장동우 김영준, 한동진 구본승	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4	이용균, 이백균	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	

2. 입법예고기간 : 2016. 6. 3.(금) ~ 6. 8.(수)(-6일간-)

3. 입법예고방법 :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

붙임 조례안 및 입법 예고문 각 1부. 끝.

주무관

**이동민**

의사팀장

**노희범**

구의회사무국장

06/03  
**정명수**

협조자

주무관

**강한철**

전문위원

**代강한철**

전문위원

**代강한철**

시행 구의회사무국-4700 ( ) 접수 ( )

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) / <http://council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4521 / 전송 02-901-4519 / 대시민공개